

1. 개정이유

-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화재예방과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‘예방규정’에 있어서,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를 통합 작성이 가능토록 하여 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
- 또한,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종전 ‘문화재청’이 ‘국가유산청’으로 변경되어 국가유산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법률상 용어가 ‘문화재’에서 ‘국가유산’으로 변경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위험물 예방규정과 타 법률 유사 보고서의 통합작성 허용(안 제63조 제2항)

- 예방규정 작성을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보고서*와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*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5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, 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

나.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용어 정비(안 별표 4 I제1호다목, XI 제1호다목 등)

- 「문화재보호법」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”을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

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지정국가유산”으로 “「문화재보호법」의
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”을 “「문화유산
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과 자연유
산 중 지정국가유산”으로 등 제명과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2항 중 “통합하여”를 “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”로 한다.

별표 4 I 제1호다목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”을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”를 “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지정국가유산”으로 하고, 같은 표 X 제1호다목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”을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”를 “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지정국가유산”으로 한다

또한, 부표의 1, 2호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예방규정의 작성 등) ① (생 략)	제63조(예방규정의 작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예방규정은 「산업안전보건 법」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 리규정과 <u>통합하여</u> 작성할 수 있다.	②----- ----- ----- <u>제44조의 공정안전보고 서 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 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와 통합하여</u> 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